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시설물의 소유·관리자에 대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 비상 시 대피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함(안 제18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